화 성 시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시 보

선람	기관의 장

제 198호

2026년 10월 27일 (화)

차 례

공 고

화성시 공고 제2026-3506호	매장유산 발굴공고(화성 요리(109-1번지 일원) 공장증설부지 내 유적)
화성시 공고 제2026-3513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해제에 따른 행정예고
화성시 공고 제2026-3517호	국·공유재산 세외수입 독촉고지서 송달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화성시 공고 제2026-3523호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 의견수렴 공고
화성시 공고 제2026-3524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 공고
화성시 만세구 공고 제2026-1133호	도로점용허가 내용 공고[향남 제2026-57호]
화성시 만세구 공고 제2026-1134호	도로점용허가 내용 공고[향남 제2026-92호]
화성시 만세구 공고 제2026-1135호	도로점용허가 내용 공고[향남 제2026-138호]
화성시 만세구 공고 제2026-1136호	도로점용허가 내용 공고[향남 제2026-140호]
화성시 만세구 공고 제2026-1137호	도로점용허가 내용 공고[향남 제2026-151호]
화성시 효행구 공고 제2026-530호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시정명령 촉구 통보 공시송달(서○환)

고 시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고시 제2026-2호	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고시[정남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설치공사(1단계)]

회람									

발행 : 화 성 시 편집 : 언론담당관

[별지 제2호 서식]

화성시 공고 제 2026 - 3506호

매장유산 공고

1. 관련근거

가.「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나.「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2. 경기도 화성특례시 만세구 향남읍 요리 109-1번지 일원 지역에서 발굴된 매장유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소유권 주장자는 90일 이내에 그 문화유산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유 물 명 7건 7점
- 토도(토기구연부편, 토기저부편, 토기동체부편, 수키와편) 7건 7점

나. 허가번호 / 유적명
- 허가 제2026-2621호
- 화성 요리(109-1번지 일원) 공장증설부지 내 유적

다. 조사지역
경기도 화성특례시 만세구 요리 109-1번지 일원

라. 조사기간
2026. 09. 08.~ 2026. 10. 07.

마. 조사기관
(재)라온문화유산연구원

바. 보 관 처
(재)라온문화유산연구원

별첨 : 출토유물 목록 및 사진 1부. 끝.

2026년 10월 27일

화 성 시 장

[별지 제1호서식]

출토유물 현황

1. 출토유물 목록

1-1 총괄표

재질별 구분	주요 출토 유물	수량	비 고
1. 금속	-	없음	
2. 옥석유리	-	없음	
3. 토도	토기구연부편, 토기저부편, 토기동체부편, 수키와편	7점	
4. 골각	-	없음	
5. 목죽초칠	-	없음	
6. 기타	-	없음	
계		7건 7점	

1-2 세부목록-①

유 물 목 록									
일련번호	유물명	수량(점)	분 류		크 기(cm)			사진번호	비고
			재질	시대	기고(길이)	구경(폭)	저경(두께)		
1	토기구연부편	1	토도	통일신라	7.3	10.6	0.5	1	1호 주거지
2	토기구연부편	1	토도	통일신라	5.7	13.4	0.7	2	1호 주거지
3	토기저부편	1	토도	통일신라	13.5	9.5	1.7	3	1호 주거지
4	토기구연부편	1	토도	통일신라	18.5	27.3	1.6	4	1호 우물
5	수키와편	1	토도	통일신라	12.2	10.4	1.4	5	1호 우물
6	토기구연부편	1	토도	통일신라	6.0	7.9	0.8	6	1호 수혈
7	토기동체부면	1	토도	통일신라	5.4	7.0	0.6	7	2호 수혈

2. 출토유물 사진-①



사진 1. 토기구연부편



사진 2. 토기구연부편



사진 3. 토기저부편



사진 4. 토기구연부편



사진 5. 수키와편



사진 6. 토기구연부편



사진 7. 토기동체부편

화성시 공고 제2026-3513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해제에 따른 행정예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의 지정 해제에 대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6. 10. 27.

화 성 시 장

1. 예고목적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제7항에 따라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시행으로 재해위험이 해소됨에 따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해제 고시하고자 함.

2. 행정예고 기간: 2026. 10. 27. ~ 2026. 11. 17.(20일간)

3. 공고방법: 화성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관련근거

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

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다.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5.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해제 대상지

지구명	위 치	지 정 내 용			해 제 사 유	비 고 (지 정 일)
		유 형	등 급	현황		
남양지구	남양읍 남양리 347-21번지 일원	붕괴위험	D	H=9.5m L=60m	정비사업 완료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해소	2016. 3. 9

6. 의견 제출

가.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은 의견서를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화성시청 재난대응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기한: 2026. 11. 17.(화) 까지

다. 제출방법: 방문, 우편, 팩스(031-5189-1524)

라. 제 출 처: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시청로 159 본관5층(재난대응과)

마. 문 의 처: 화성시청 재난대응과 자연재난팀(☎031-5189-3978)

※ 기한 내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공사 전 후 현장사진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붙임1] 현장 전후사진



남양지구 정비사업(전)



남양지구 정비사업(후)

[붙임2]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table>
<tr><td rowspan="2">의견제출인</td><td colspan="2">성명</td></tr>
<tr><td>주소</td><td>전화번호</td></tr>
<tr><td rowspan="4">의견제출
내용</td><td colspan="2">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td></tr>
<tr><td rowspan="2">당사자</td><td>성명(명칭)</td></tr>
<tr><td>주소
(전화번호:)</td></tr>
<tr><td>의 견</td><td></td></tr>
<tr><td>기 타</td><td></td></tr>
</table>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화성시 공고 제2026-3517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과한 세외수입(정기분)에 대하여 고지서(독촉분)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7일

화 성 특 례 시 장

1. 공고명칭 : 국공유재산 세외수입 독촉고지서 송달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27. ~ 2026. 11. 10. (15일간)
4. 공고 및 게시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안내사항
   가. 위 공고기간까지 화성시청 건설과를 방문하여 국·공유재산 2026년도 사용료 납부 고지서를 교부 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률 규정에 따라 연체료가 가산됩니다.
   나. 상기 공고기간 종료 시 본 서류가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사항 : 화성시청 건설과(☎ 031-5189-3132)

2026년 10월 27일

붙임 **공시송달 공고 대상**

연번	수취인	주 소	공시송달 공고 사유
1	송*선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	폐문부재
2	박*광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1길 **	기타
3	이*영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장안면 금의솔안길 **	기타
4	노*보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팽성대교길 **	기타
5	강*선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와우로 **	기타
6	이*연	경기도 오산시 수청로 **	기타
7	이*연	경기도 오산시 수청로 **	기타
8	최*애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시청로102번길 **	기타
9	홍*석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14길 **	기타
10	㈜더*이에스	경기도 화성시 병점구 효행로763번길 **	주소불명
11	고*로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서신면 백미길 **	기타
12	이*빈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안두미2길 **	기타
13	한*규	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비봉면 양노로 **	기타
14	㈜희*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조암남로 **	기타
15	㈜대*산업개발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현대기아로 **	수취인불명
16	최*옥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화당길 **	주소불명
17	넥*트랜드㈜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사랑길 **	기타
18	안*균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수영로 **	기타
19	김*민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양노로 **	기타
20	㈜은*토건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역골로 **	주소불명

연번	수취인	주 소	공시송달 공고 사유
21	이*경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11가길 **	기타
22	이*경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11가길 **	기타
23	파*살나임버트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	수취인불명
24	김*희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각골로 **	주소불명
25	성*교회향남교회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평리 **	주소불명
26	황*권	경기도 화성시 화산로 **	수취인불명
27	서*㈜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마도로 **	기타
28	고*숙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양노로 **	수취인불명
29	장*호	경기도 시흥시 은계중앙로 **	기타
30	홍*선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매화리 **	수취인불명
31	㈜삼*리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로 **	주소불명
32	서*㈜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마도로 **	기타
33	이*희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병목안로142번길 **	주소불명
34	㈜아*디앤씨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세곡리 **	주소불명
35	㈜영*엠티씨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화성로 **	주소불명
36	하*섭 외 2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서로28길 **	기타
37	배*식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삼천병마로 **	수취인불명
38	이*희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	기타
39	㈜오*드건설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984번안길 **	기타
40	권*례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덕머루1길 **	기타
41	㈜남*기업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시장로24번길 **	기타
42	김*나	경기도 화성시 동탄중앙로 **	수취인불명

연번	수취인	주 소	공시송달 공고 사유
43	명지㈜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화성로 **	기타
44	㈜혁*전자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해창길 **	수취인불명
45	김*록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수룡길 **	기타
46	송*규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348번길 **	수취인불명
47	김*식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상하저길 **	주소불명
48	최*기	경기도 화성시 화산중앙로 **	주소불명
49	김*민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양노로 **	기타
50	명*㈜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화성로 **	기타
51	김*영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안산천동로5길 **	주소불명
52	장*곤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	기타
53	조현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	수취인불명
54	최*영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금당북길 **	기타
55	김*진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로 **	수취인불명
56	남*진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로 **	수취인불명
57	문*순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자울길 **	기타
58	㈜글*벌씨앤디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독정리 **	기타
59	선*운수㈜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대금로 **	기타
60	김*근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백미길 **	수취인불명
61	㈜리*루스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서봉로38번길 **	수취인불명
62	정*국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원안길 **	기타
63	김*혜	서울특별시 중구 난계로21길 **	기타
64	경주김씨 필*파 종회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장안고잔길 **	수취인불명

연번	수취인	주 소	공시송달 공고 사유
65	이*재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한뿌리1길 **	기타
66	㈜덕*개발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발안로 **	수취인불명
67	장*식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화성로2381번길 **	기타
68	㈜정*전자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해창길 **	수취인불명
69	김*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	기타
70	박*수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솔안길 **	주소불명
71	㈜하*에프앤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	수취인불명
72	일*철강산업㈜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한말길 **	수취인불명
73	장*곤	경기도 청주시 서원구 월평로 **	기타
74	이*운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석교안길16번길 **	기타
75	황*진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수면길 53번길 **	기타
76	㈜삼*사료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고모리 **	수취인불명
77	이*석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	수취인불명
78	㈜연*정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2로65번길 **	수취인불명
79	한*필	경기도 광명시 양지로 **	기타
80	S. N*틸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주석로 **	주소불명
81	안*애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	기타
82	㈜이*에프앤씨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주석로 **	기타
83	㈜천*기계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마도로 **	수취인불명
84	김*학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황골길46번길 **	주소불명
85	손*경	경기도 군포시 수리산로 **	수취인불명
86	㈜우*건설	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21길 **	수취인불명

연번	수취인	주 소	공시송달 공고 사유
87	이*순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탕정면로 **	수취인불명
88	유*선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	수취인불명
89	호*딘코이	경기도 오산시 오산로178번길 **	주소불명
90	김*봉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도림로11라길 **	수취인불명
91	이*형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8길 **	기타
92	김*학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황골길46번길 **	주소불명
93	이*수	경기도 화성시 수노을1로 **	기타
94	이*열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매골길 **	기타
95	윤*장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공도로 **	기타
96	㈜하*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발안서로 **	주소불명
97	이*환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언동로 **	수취인불명
98	㈜미*씨앤에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포공원1로 **	주소불명
99	오*희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화성로1081번길 **	기타
100	이*주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송산동로 **	수취인불명
101	홍*완, 라*숙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	수취인불명
102	손*지	인천광역시 연수구 랜드마크로 **	기타
103	㈜호*개발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금당길 **	수취인불명
104	왕*승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역골로 **	기타
105	이*숙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서로 **	기타
106	서*은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	기타
107	㈜신*메탈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초록로210번길 **	주소불명
108	황*화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화성로785번길 **	기타

연번	수취인	주 소	공시송달 공고 사유
109	홍*학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서로348번길 **	기타
110	유*준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옥길1길 **	기타
111	규*공파중송종중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송산로241번길 **	기타
112	㈜에*스 석재	인천광역시 중구 연안부두로75번길 **	수취인불명
113	㈜호*개발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금당길 **	수취인불명
114	박*렬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역골중앙로41번길 **	기타
115	이*현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봉곡1길 **	기타
116	윤*환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석동길 **	주소불명
117	권*희	경기도 화성시 동탄기흥로353번길 **	수취인불명
118	㈜미*개발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중원길 **	수취인불명
119	배*서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광로123번길 **	수취인불명
120	김*진 외 3인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로 **	수취인불명
121	백*영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	기타
122	㈜조*개발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고잔2길 **	기타
123	이*정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구영앞길 **	수취인불명
124	백*영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	기타
125	백*영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	기타
126	㈜원*시개발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207번길 **	수취인불명
127	송*개발㈜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소개무골길 **	기타
128	장*호	경기도 시흥시 은계중앙로 **	기타
129	㈜포*리스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안벼슬길102번길 **	수취인불명
130	㈜조*개발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고잔2길 **	기타

연번	수취인	주 소	공시송달 공고 사유
131	정*미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동 **	주소불명
132	고*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	수취인불명
133	㈜희*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조암남로 **	기타
134	㈜피*솔루션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덕절전원길 **	기타
135	정*석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해운로 **	기타
136	㈜제*빌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궁평항로 **	수취인불명
137	삼진파워텍㈜	인천광역시 남동구 앵고개로697번길 **	수취인불명
138	이*순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탕정면로 **	수취인불명
139	이*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당곡1로 **	주소불명
140	이*진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고향의봄길282번길 **	기타
141	최*수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청원서길 **	기타
142	㈜위*산업개발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로 **	주소불명
143	서*힘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송림로68번길 **	기타
144	최*민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두곡길 **	기타
145	이*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부부로8길 **	주소불명
146	홍*옥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여술길 **	기타
147	농업회사법인다*주식회사	경기도 화성시 병점3로 **	수취인불명
148	㈜이*종합개발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동서촌로 **	기타
149	윤*미	경기도 화성시 강여울길 **	기타
150	이*희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일로 **	기타
151	김*옥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	수취인불명
152	㈜케*후렉소	경기도 시흥시 공단2대로 **	수취인불명

연번	수취인	주 소	공시송달 공고 사유
153	한*철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	수취인불명
154	㈜케*앤지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버들로1318번길 **	수취인불명
155	김*화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안현로서6길 **	기타
156	이*한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하가등길 **	기타
157	이*국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소학1길 **	주소불명
158	김*형	충청남도 태안군 고남면 발화지길 **	폐문부재
159	조*완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성지로 **	기타
160	김*호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효자각로 **	기타
161	이*희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일로 **	기타
162	전*자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드랭이안길 **	기타
163	㈜엠*틀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신양1길 **	수취인불명
164	최*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공원로2길 **	수취인불명
165	정*제관㈜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개월안길 **	주소불명
166	김*환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본로30길 **	기타
167	㈜대*축로엔지니어링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수정로 **	수취인불명
168	㈜명*산업개발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하저자안로 **	주소불명
169	주*범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안현로서6길 **	기타
170	강*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	주소불명
171	김*호	경기도 의왕시 오리나무1길 **	주소불명
172	이*숙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	기타
173	김*운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3.1만세로 **	기타
174	일*철강산업㈜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한말길 **	수취인불명

연번	수취인	주 소	공시송달 공고 사유
175	디*이치팩토리 ㈜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보통내길 **	기타
176	이*우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12길 **	수취인불명
177	박*선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이현로30번길 **	수취인불명
178	디*스기전㈜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서해로 **	수취인불명
179	㈜하*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발안서로 **	주소불명
180	남*자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봉곡2길 **	기타
181	조*애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	기타
182	㈜성*디벨롭먼트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로 **	주소불명
183	강*구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35길 **	기타
184	김*현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당성로420번길 **	수취인불명
185	해*라기개발 ㈜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매봉길 **	수취인불명
186	고*재	경기도 광명시 하안로 **	기타
187	이*순	경기도 화성시 효행로 **	수취인불명
188	임*섭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말로 **	수취인불명
189	랜*베스트㈜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남양만로 **	기타
190	송*봉	서울특별시 성동구 난계로 **	기타
191	김*진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만년로 **	수취인불명
192	황*란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	수취인불명
193	조*매	서울특별시 동작구 남부순환로265길 **	기타
194	리후이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선로 **	수취인불명
195	장*준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하길로 **	수취인불명
196	㈜주*디엔씨	서울특별시 송파구 충민로 **	주소불명

연번	수취인	주 소	공시송달 공고 사유
197	㈜제*앤에스인베스트먼트	충청남도 계룡시 엄사면 **	수취인불명
198	㈜제*앤에스인베스트먼트	충청남도 계룡시 엄사면 **	수취인불명
199	㈜에*알	경기도 화성시 안녕북길 **	수취인불명
200	㈜모*이앤씨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은행나무로 **	주소불명
201	손*숙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안산벌말길 **	수취인불명
202	김*우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화성로 **	수취인불명
203	고*진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어비산길 **	폐문부재
204	㈜팬*리아씨엔에스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푸른들판로 **	수취인불명
205	이*재	경기도 화성시 수노을1로 **	기타
206	임*미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하나문길29번길 **	기타
207	㈜그*이트종합건설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역골로 **	기타
208	㈜서*테크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율암길 **	주소불명
209	이*미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	기타
210	우*경	경기도 화성시 병점중앙로 **	수취인불명
211	이*권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거묵골길 **	기타
212	㈜모*이앤씨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푸른들판로 **	수취인불명
213	유*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동수원로145번길 **	수취인불명
214	박*봉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와우로 **	기타
215	박*봉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와우로34번길 **	기타
216	김*성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화성로785번길 **	수취인불명
217	정*주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한절이2길 **	주소불명
218	㈜반*테크엔지니어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구레골길 **	수취인불명

연번	수취인	주 소	공시송달 공고 사유
	링		
219	이*이치종합건설㈜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상신하길로298번길 **	주소불명
220	이*이치종합건설㈜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상신하길로298번길 **	주소불명
221	이*호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포승장안로 **	기타
222	정*순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로52마길 **	기타
223	㈜기*산업개발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3.1만세로 **	수취인불명
224	김*우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가능골1길 **	기타
225	황*화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화성로785번길 **	기타
226	김*길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금당북길104번길 **	기타
227	서*훈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	수취인불명
228	㈜아*리코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매송고색로375번길 **	수취인불명
229	김*준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소개무골길 **	기타
230	㈜푸*환경본부	경기도 화성시 와우안길 **	기타
231	양*심	경기도 오산시 역광장로 **	주소불명
232	문*1리경로당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서봉로869번길 **	기타
233	김*찬	서울특별시 성동구 상원길 **	기타
234	황*부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	기타
235	이*영	충청남도 보령시 주공로 **	폐문부재
236	황*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모래내로 **	수취인불명
237	박*일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여술1길 **	기타
238	㈜함*	경기도 화성시 꽃내음2길 **	수취인불명
239	㈜나*야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청북서로 **	수취인불명
240	㈜리*루스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서봉로38번길 **	수취인불명

연번	수취인	주 소	공시송달 공고 사유
241	㈜금*코스텍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3.1만세로281번길 **	수취인불명
242	한*옥	하남시 위례중앙로 **	수취인불명
243	㈜시온테크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한보라2로48번길 **	수취인불명
244	㈜모*텍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시청로 **	기타
245	김*연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와우로 **	기타
246	케*비부동산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	주소불명
247	㈜신*건설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남양만로 **	수취인불명
248	㈜화*도시개발건축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구장길 **	주소불명
249	김*미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	수취인불명
250	장*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4길 **	기타
251	㈜에*엠솔루션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토성로 **	수취인불명
252	김*미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어섬길153번길 **	기타
253	㈜다*자원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고모리 **	수취인불명
254	㈜투*홀딩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	주소불명
255	㈜별*나산업개발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포승장안로 **	수취인불명
256	황*성	서울특별시 구로구 남부순환로 **	기타
257	㈜블링크 양종훈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서천로201번길 **	수취인불명
258	이*희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매송로220번길 **	기타
259	허*숙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로 **	주소불명
260	진월호	경기도 평택시 이충로 **	수취인불명
261	윤*환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석동길 **	주소불명
262	㈜함*	경기도 화성시 꽃내음2길 **	수취인불명

연번	수취인	주 소	공시송달 공고 사유
263	장*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4길 **	기타
264	㈜신*건설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남양만로 **	수취인불명
265	에*치엠씨아이㈜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시장로66번길 **	기타
266	㈜드*맥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가장로 **	주소불명
267	기*진	경기도 시흥시 계수로 **	기타
268	송*례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역골로 **	주소불명
269	경주김씨 필*파종회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장안고잔길 **	수취인불명
270	박*호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화성로1081번길 **	기타
271	김*수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작골길 **	기타
272	권*식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덕머루1길 **	기타
273	조*매	서울특별시 동작구 남부순환로265길 **	기타
274	정*온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남로 **	주소불명
275	최*영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금당북길 **	기타
276	송*개발㈜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주석로 **	기타
277	㈜하*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발안서로 **	주소불명
278	김*희	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24길 **	수취인불명
279	적*㈜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발안공단로2길 **	수취인불명
280	이*연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오래4길 **	기타
281	㈜동*지앤씨	경기도 평택시 송탄로 **	수취인불명
282	㈜보*정밀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쌍송길 **	수취인불명
283	정*영	경기도 시흥시 신천로25번길 **	기타

연번	수취인	주 소	공시송달 공고 사유
284	㈜기*산업개발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3.1만세로 **	수취인불명
285	박*일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여술1길 **	기타
286	문*생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역골동로 **	기타
287	김*남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평밭길 **	기타
288	㈜명*씨엔아이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무하로 **	수취인불명
289	㈜흥*개발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송교길 **	수취인불명
290	상*리 새마을회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삼봉길71번길 **	기타
291	김*길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금당북길104번길 **	기타
292	엘*건설㈜	경기도 화성시 푸른들판로 **	수취인불명
293	최*열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비봉로71번길 **	기타
294	이*승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	수취인불명
295	정*수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	기타
296	㈜가*솔라텍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장안로 **	수취인불명
297	풍*농산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버들로 **	기타
298	홍*완, 라*숙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	수취인불명
299	문*영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유리마을길 **	수취인불명
300	㈜서*물류 외 2개사	경기도 시흥시 공단1대로 **	수취인불명
301	윤*수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화성로2397번길 **	주소불명
302	박*순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송교큰말길 **	기타
303	김*정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	기타
304	이*범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조암죽말길 **	기타
305	이*선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절골안길 **	수취인불명

연번	수취인	주 소	공시송달 공고 사유
306	국*환경산업㈜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요당길 **	주소불명
307	해*㈜	경기도 의왕시 솔고개길 **	수취인불명
308	㈜지*산업개발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발안로 **	주소불명
309	장*준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하길로 **	수취인불명
310	로*나무 교회	경기도 오산시 외삼미로15번길 **	수취인불명
311	㈜투*홀딩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90번길 **	주소불명
312	조*홍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	기타
313	㈜우*건설	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21길 **	수취인불명
314	최*국	경기도 평택시 고덕국제대로 **	기타
315	박*만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육일안길 **	기타
316	㈜유*씨오알피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발안만세길 **	수취인불명
317	정*남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역골동로 **	기타
318	김*혜	서울특별시 중구 난계로21길 **	기타
319	㈜금*코스텍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3.1만세로281번길 **	수취인불명
320	㈜가*아산업개발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3.1만세로 **	기타
321	박*문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서봉로869번길 **	기타
322	김*림	서울특별시 양천구 **	기타
323	이*수	경기도 화성시 수노을1로 **	기타
324	최*수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영흥서로 **	주소불명
325	강*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로5길 **	기타
326	㈜지*산업개발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발안로 **	주소불명
327	㈜씨*씨식자재유통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솔안길 **	주소불명

연번	수취인	주 소	공시송달 공고 사유
328	이*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	수취인불명
329	㈜아*종합개발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3.1만세로 **	수취인불명
330	김*민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양노로 **	기타
331	문*석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문화로84번길 **	수취인불명
332	김*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	기타
333	삼*산업㈜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충경로 **	주소불명
334	김*운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3.1만세로 **	기타
335	㈜파*맨엔지니어링	인천광역시 연수구 하모니로 **	수취인불명
336	㈜포*리스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안벼슬길102번길 **	수취인불명
337	㈜제*빌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궁평항로 **	수취인불명
338	박*서 외 1인(유한회사 금*개발)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조암죽말길87번길 **	기타
339	정*상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매송고색로375번길 **	주소불명
340	㈜다*자원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고모리 **	수취인불명
341	이*현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난곡행정길49번길 **	폐문부재
342	에*치디주택건설㈜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반월새싹길 **	주소불명
343	㈜원*스트개발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청원산단1길 **	수취인불명
344	선*철강㈜	인천광역시 서구 경명대로 **	수취인불명
345	김*이미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호수공원로 **	기타
346	㈜흥*개발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송교길 **	수취인불명
347	선*철강㈜	인천광역시 서구 경명대로 **	수취인불명
348	김*진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쇠틀길 **	수취인불명
349	한*전력공사(오산지사)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	수취인불명

연번	수취인	주 소	공시송달 공고 사유
350	서*은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	기타
351	농업회사법인 ㈜토*토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진개골길 **	기타
352	㈜대*물산	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2길 **	주소불명
353	㈜희*알씨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현대기아로250번길 **	기타
354	정*옥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동산고안길 **	주소불명
355	알*레파까트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	주소불명
356	김*영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	주소불명
357	㈜주*디엔씨	서울특별시 송파구 충민로 **	주소불명
358	㈜한*강재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석교리 **	수취인불명
359	송*문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	기타
360	㈜엠*테크원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사랑길 **	주소불명
361	문*생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역골동로 **	기타
362	㈜모*이앤씨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푸른들판로 **	수취인불명
363	이*경	경기도 의왕시 모락로 **	수취인불명
364	김*진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쇠틀길 **	수취인불명
365	이*숙 외 2인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	수취인불명
366	문*석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문화로84번길 **	수취인불명
367	안*일	충청북도 충주시 연수로3길 **	기타
368	전*규	경기도 광명시 덕단이로 **	기타
369	문*영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유리마을길 **	수취인불명
370	㈜인*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시청로 **	기타
371	대*산업개발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삼천병마로 **	수취인불명

연번	수취인	주 소	공시송달 공고 사유
372	김*정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	주소불명
373	김*정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	주소불명
374	김*정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	주소불명
375	공*석,권*혁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관항길242번길 **	기타
376	㈜향*플러스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조암동로36번길 **	수취인불명
377	전*경	경기도 광명시 양지로 **	기타
378	김*훈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155나길 **	기타
379	㈜건*토건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커낼로260번길 **	수취인불명
380	농*에너지주식회사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양노로 **	수취인불명
381	㈜태*김치	경기도 화성시 안녕길 **	수취인불명
382	대*산업개발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삼천병마로 **	수취인불명
383	대*산업개발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삼천병마로 **	수취인불명
384	김*정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	주소불명
385	한*해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문화마을3길 **	기타
386	최*식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성지로 **	주소불명
387	김*종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남로 **	주소불명
388	㈜케*씨미크론	경기도 화성시 동오2길 **	수취인불명
389	한*규	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비봉면 양노로 **	기타
390	유*경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	기타

화성시 공고 제2026 - 3523호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 의견수렴 공고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부여를 위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7일

화 성 시 장

1. 공고내용: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를 위한 주민 의견 수렴

- 도로 14개 구간(붙임 참조)

2. 공고 및 의견 제출기간 : 2026. 10. 27.(화) ~ 2026. 11. 10.(화)

3. 의견제출 방법

가. 의견서 작성 후 서면제출

- 방문 및 우편 :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시청로 159 화성시청 토지정보과
- 팩스 및 이메일: (Fax)031-5189-1585, (이메일) know1024@korea.kr

나. 의견서는 별도서식이 없으며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성명), 주소 및 연락처, 도로명 부여 및 변경(안)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을 작성하여 제출함.

4. 도로명 부여 절차

예비도로명 부여	⇨	주민의견 수렴 공고	주민의견 수렴한 날부터 ⇨ 30일이내	주소정보 위원회 심의	심의 마친날부터 ⇨ 10일 이내	도로명 부여 고시
주민의견 청취 및 직권		14일 이상		주소정보 위원회 개최		도로명 고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토지정보과 도로명주소팀(☎ 031-5189-164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 조서

일련번호	도로유형	도로위계	에비도로명	관할행정구역	길이 (m)	폭 (m)	기초간격 (m)	시점 (기초번호)	종점 (기초번호)	중심선	부여사유	참고도면
1	지상도로	로	**송산첨단3로**	화성시 (송산면)	1,469	24	20	만세구 송산면 용포리 1-7 (1)	만세구 송산면 고정리 315-21 (148)		행정구역명(송산면)과 송산남측지구의 첨단산업단지를 인용하여 부여	1p
2	지상도로	로	**송산첨단4로**	화성시 (송산면)	1,401	24	20	만세구 송산면 고정리 315-6 (1)	만세구 송산면 고정리 0 (142)		행정구역명(송산면)과 송산남측지구의 첨단산업단지를 인용하여 부여	1p
3	지상도로	로	**서화성역1로**	화성시 (남양읍)	745	23	20	만세구 남양읍 문호리 0 (1)	만세구 남양읍 문호리 0 (76)		시설물명(서화성역)을 이용하여 부여	1p
4	지상도로	로	**서화성역2로**	화성시 (남양읍)	761	23	20	만세구 남양읍 문호리 0 (1)	만세구 남양읍 문호리 0 (78)		시설물명(서화성역)을 이용하여 부여	1p
5	지상도로	로	**서화성역3로**	화성시 (남양읍)	392	33	20	만세구 남양읍 문호리 0 (1)	만세구 남양읍 문호리 0 (40)		시설물명(서화성역)을 이용하여 부여	1p
6	지상도로	길	**송산바이오1길**	화성시 (송산면)	648	12	20	만세구 송산면 삼존리 649-402 (1)	만세구 송산면 삼존리 766-3 (66)	도면참조	행정구역명(송산면)과 송산남측지구의 바이오단지를 인용하여 부여	1p
7	지상도로	길	**송산바이오2길**	화성시 (송산면)	479	17	20	만세구 송산면 삼존리 649-17 (1)	만세구 송산면 삼존리 766-5 (48)		행정구역명(송산면)과 송산남측지구의 바이오단지를 인용하여 부여	1p
8	지상도로	길	**고정첨단3길**	화성시 (송산면)	991	23	20	만세구 송산면 고정리 0 (1)	만세구 송산면 고정리 315-20 (100)		행정구역명(고정리)과 송산남측지구의 첨단산업단지를 인용하여 부여	1p
9	지상도로	길	**고정첨단4길**	화성시 (송산면)	674	23	20	만세구 송산면 고정리 315-20 (1)	만세구 송산면 고정리 0 (68)		행정구역명(고정리)과 송산남측지구의 첨단산업단지를 인용하여 부여	1p
10	지상도로	길	**송산미래4길**	화성시 (남양읍)	408	17	20	만세구 남양읍 시리 0 (1)	만세구 남양읍 시리 0 (42)		송산미래길 일련번호 부여방식을 이용	1p

도로명 부여(안) 의견서

대상 도로명			
의견제출자		연락처	
주소(사업장)			

※ 의견제출자 인적사항은 필수 기재사항임

화성시 공고 제 2026 - 3524 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 공고

화성시 관내 건축공사현장에 대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안전점검을 수행하고자,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점검 업무수행지침」 제18조에 따라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모집 공고합니다.

2026. 10. 27.

화 성 시 장

1. 공 고 명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2. 사업내역(건축허가 개요)

대지위치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주용도
경기도 화성시 병점구 병점동 892-2	1,360.30	816.88	6,799.65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3. 안전점검 내용 (과업내용)

가. 안전점검대상

대지위치	안전점검 대상	안전점검 비용
화성시 동탄구 반송동 92-5번지	- 정기안전점검(3회) - 천공기(2회) - 타워크레인(4회)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2회) - 높이 5m 이상 거푸집, 동바리(2회) - 높이 2m 이상 흙막이지보공(2회) - 항타, 항발기(2회) - 현장조립 복합가설구조물(2회)	57,235,000원 (VAT 포함)

나. 점검시기 : 현장협의

다. 안전점검은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등 관계 규정의 점검기준을 따르며, 점검 완료 후 종합보고서를 작성·제출.

※ 본 과업의 범위는「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1, 3 및 4호,「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1조의 2에 따른 안전점검으로,「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을 준수하여 점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제23조(정기안전점검의 실시)에 따라 인접건축물 또는 구조물 등 공사장주변 안전조치의 적정성 등을 유념하여 점검할 것.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함.

4. 신청자격 및 결정방법

가. 신청자격 : **화성시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된 업체**(등록명부 B 적용)

※ 등록명부 공고 : 화성시 공고 제2026-2620호(2026. 7. 22.)

나. 결정방법

1) 「화성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및 입찰가격을 평가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업체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함. 단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업체가 없는 경우에는 종합평점 85점에 가장 근접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함.

【최종평가】

평가항목	기 준	심 사 방 법
수행능력	60점	화성시 PQ 세부평가기준 참조
입찰가격	40점	
합 계	100점	

2) 1)에 해당하는 업체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추천한 업체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함.

○ **평가적용기준 : 붙임「화성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 참고**

3) 당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PQ평가 및 지정공고 시 제출한 입찰가격 점수 합산결과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함.

5. 신청서 제출일시 및 방법

가. 접수기간 : 2026. 10. 30.(금) 09:00 ~ 16:00 (12:00 ~ 13:00 점심시간) ※시간엄수

나. 접수방법 : 화성시청 건축과 방문접수(건축허가팀 황규민 주무관)

※인터넷 접수는 불가하며, **대지위치 별 각각 신청하여야 함.**

다. 제출서류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사본을 제출할 경우 원본대조 날인)

1) 안전점검용역 참여신청서[붙임 서류(자기평가서 등 평가자료는 제외) 포함] 1부. [양식2]

2) 해당 용역의 종합평가표 1부.[양식3]

3) 안전점검용역입찰서 1부. [양식15]

6. 개찰결과 : 2026. 11. 2.(월) 14:00 이후 유선통보

7. 사실확인 서류 제출기간(종합평점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에 한함.)

가. 제출기간 : 2026. 11. 4.(수) 09:00 ~ 18:00 (근무시간 내)

나. 제출서류 (사실 확인 서류)

1) 기술인 현황 1부. [서식4]

2) 사업책임기술인 경력 및 용역수행실적 1부. [서식5]

3) 분야별책임기술인 경력 및 용역수행실적 1부. [서식6]

4) 분야별참여기술인 경력 및 용역수행실적 1부. [서식7]

5) 참여기술인 인원보유현황 집계표 1부. [서식8]

6) 참여업체 용역수행실적 1부. [서식9]

7) 부실벌점 및 계약불이행 1부. [서식10]

8) 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업무)정지 1부. [서식11]

9) 신용평가등급 1부. [서식12]

10) 투자실적 1부. [서식 13]

11) 기술개발 실적 1부. [서식14]

12)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확인서

※ 사실확인서류 제출 시 **안전점검용역 참여신청서, 해당 용역의 종합평가표, 책임기술인 및 참여기술인의 최근 1년간 경력서(협회발행본)를 열람용으로 복사하여(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별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원본대조필 필히 날인)

※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 제출.**

※ **사실 확인 서류는 별첨1의 [양식]을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원본 1부를 아래 내용에 따라 제출하여야 함.**

(1) 좌측제본(크기 A4), 견출지로 항목 구본 (2) 색상 : 표지 백색, 간지 청색

8. 열람 및 이의신청

가. 기 간 : 2026. 11. 4.(수) 09:00 ~ 12:00

나. 열람방법 : 화성시청 건축과 방문 열람을 원칙으로 함.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에 한하며, 서류 복사는 불가함.)

다. 이의신청 방법 : 반드시 서면(문서)으로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9.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모서류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세부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의 누락·오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고,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신청자에게는 지정결과를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라. 응모서류가 접수된 이후에는 교환 또는 수정이 불가하오니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 기재 내용과 증빙자료가 상이할 경우 지정권자가 판단하여 평가합니다.

마. 신청서류 및 이의신청에 따른 사실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정신청자에게 증빙자료를 요구(전화)할 수 있으며, 소명 또는 증빙자료를 요구한 후 24시간 이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 항목은 “0”점 처리합니다.

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사업비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지정 당시의 기준에 따라 당사자 간 점검비용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사.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규정을 우선 적용합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청 건축과(☎031-5189-26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화성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 및 양식 1부. 끝.

건설공사(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

1. 일반사항

가.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은 화성시 건설공사(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된 기관에 한한다.

나.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에 참여한 수행기관이 1개사일 경우 그 수행기관을 지정하며, 2개사 이상일 경우 다음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2. 안전점검비용에 따른 평가 적용기준

<table>
<tr><th>구 분</th><th>평가기준</th></tr>
<tr><td>안전점검비용
1억원 미만</td><td>
○ 분야별 세부평가기준을 따르지 않고 아래 가격평가 방법만으로 점수 산정
<table>
<tr><th>심사항목</th><th>배점범위</th><th>세부기준 및 배점</th></tr>
<tr><td rowspan="11">입찰가격</td><td rowspan="11">100점</td><td>· 균형가격 1번째 근접 : 100점</td></tr>
<tr><td>· 균형가격 2번째 근접 : 97점</td></tr>
<tr><td>· 균형가격 3번째 근접 : 94점</td></tr>
<tr><td>· 균형가격 4번째 근접 : 91점</td></tr>
<tr><td>· 균형가격 5번째 근접 : 88점</td></tr>
<tr><td>· 균형가격 6번째 근접 : 85점</td></tr>
<tr><td>· 균형가격 7번째 근접 : 82점</td></tr>
<tr><td>· 균형가격 8번째 근접 : 79점</td></tr>
<tr><td>· 균형가격 9번째 근접 : 76점</td></tr>
<tr><td>· 균형가격 10번째 근접 : 73점</td></tr>
<tr><td>· 균형가격 11번째 이하 : 70점</td></tr>
</table>
- 수행기관에서 제출한 안전점검 비용(이하 “입찰가격”이라 한다.)을 산술평균하여 “균형가격”을 산출하며, 균형가격에 근접한 순서에 따라 점수를 산정(원단위 이하 절사)
※ 입찰가격은 공고문에 기재된 점검비용 × 87.745% 이상, 공고문에 기재된 점검비용 이하로 제출하여야 하며, 점검비용 × 87.745% 미만 또는 공고된 점검비용을 초과하여 입찰가격 제출 시 실격 처리하고 균형가격 산출에서 제외
- 균형가격 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응모업체 수 3개사 이하: 평균 수행가격 입찰가
· 응모업체 수 4개사 이상: 평균 수행가격 입찰가(최고, 최저 수행가격은 제외)
- 균형가격에 근접한 순서는 균형가격과 입찰가격 차이의 절댓값을 이용하여 산정
- 입찰가격이 같을 경우 공동점수를 인정하며, 차 순위 신청자는 공동점수 신청자 이후 점수로 산정
- 균형가격 1번째 근접자가 다수인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요청을 한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추첨을 통하여 지정한다.
</td></tr>
<tr><td>안전점검비용
1억원 이상</td><td>○ 총 괄</td></tr>
</table>

심사항목	배점
사업수행능력	60점
입찰가격	40점

○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심사항목	기준	심 사 방 법
사업수행능력	60 점	○ 평점 = $\frac{\text{평가점수}}{100} \times 60$점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입찰가격	40 점	-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적용 ○ 평점 = $40\times\{1-2\times(\frac{\text{입찰가격}}{\text{입찰평균가격}} - \frac{95}{100})\}$ · 입찰평균가격: 각 업체의 입찰가격 합계/입찰자 수 · 입찰가격이 입찰 평균가격의 100분의 95 이하인 경우의 평점은 만점으로 평가한다. · 평점이 배점의 100분의 60 미만인 경우에는 평점을 배점의 100분의 60으로 평가한다.
계	100 점	

2. 분야별 세부평가기준

<table>
<tr><th>평가항목</th><th>평가요소</th><th>배점</th><th>세 부 평 가 방 법</th></tr>
<tr><td rowspan="3">가.
참여
기술인
[45]</td><td>(1) 사업
책임기술인</td><td>(18)</td><td>- 사업책임기술인 1인을 대상으로 평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품질관리 전문분야만 해당한다)또는 안전관리(건설안전 전문분야 만 해당한다)의 특급기술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자 (미달시 실격)</td></tr>
<tr><td>(나) 경력</td><td>8</td><td>- 다음에 해당하는 용역을 수행한 경력기간을 합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이상의 용역
<table>
<tr><td>10년이상</td><td>10년미만
9년이상</td><td>9년미만
8년이상</td><td>8년미만
7년이상</td><td>7년미만</td></tr>
<tr><td>8.0</td><td>7.2</td><td>6.4</td><td>5.6</td><td>4.8</td></tr>
</table></td></tr>
<tr><td>(다) 실적(건수)
실적(금액)</td><td>5
5</td><td>- 다음에 해당하는 용역을 수행한 실적을 환산하여 합산 평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이상의 용역
수행실적(건수, 금액)
・ 산정방법 : 안전점검 건수,금액
<table>
<tr><td>20건이상</td><td>20건미만
17건이상</td><td>17미만
15건이상</td><td>15건미만
12건이상</td><td>12건미만</td></tr>
<tr><td>5.0</td><td>4.5</td><td>4.0</td><td>3.5</td><td>3.0</td></tr>
</table>
<table>
<tr><td>4억원이상</td><td>4억원미만
3.4억원이상</td><td>3.4억원미만
3억원이상</td><td>3억원미만
2.4억원이상</td><td>2.4억원미만</td></tr>
<tr><td>5.0</td><td>4.5</td><td>4.0</td><td>3.5</td><td>3.0</td></tr>
</table>
＊ 용역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간 기준</td></tr>
</table>

<table>
<tr><th>평가항목</th><th>평가요소</th><th>배점</th><th>세 부 평 가 방 법</th></tr>
<tr><td rowspan="4"></td><td>(2) 분야별
책임기술인</td><td>(18)</td><td>- 분야별책임기술인 1인을 대상으로 평가</td></tr>
<tr><td>(가) 자격</td><td>2</td><td>-「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품질관리 전문분야만 해당한다)또는 안전관리(건설안전 전문분야 만 해당한다)의 특급기술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자
<table><tr><th>특급</th><th>고급</th><th>중급 이하</th></tr><tr><td>2.0</td><td>1.0</td><td>0.5</td></tr></table></td></tr>
<tr><td>(나) 경력</td><td>6</td><td>- 다음에 해당하는 용역을 수행한 경력기간을 합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이상의 용역
<table><tr><th>10년이상</th><th>10년미만
9년이상</th><th>9년미만
8년이상</th><th>8년미만
7년이상</th><th>7년미만</th></tr><tr><td>6.0</td><td>5.4</td><td>4.8</td><td>4.2</td><td>3.6</td></tr></table></td></tr>
<tr><td>(다) 실적(건수)
실적(금액)</td><td>5
5</td><td>- 다음에 해당하는 용역을 수행한 실적을 환산하여 합산 평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이상의 용역 수행실적(건수, 금액)
・ 산정방법 : 안전점검 건수, 금액
<table><tr><th>20건이상</th><th>20건미만
17건이상</th><th>17미만
15건이상</th><th>15건미만
12건이상</th><th>12건미만</th></tr><tr><td>5.0</td><td>4.5</td><td>4.0</td><td>3.5</td><td>3.0</td></tr></table><table><tr><th>4억원이상</th><th>4억원미만
3.4억원이상</th><th>3.4억원미만
3억원이상</th><th>3억원미만
2.4억원이상</th><th>24억원미만</th></tr><tr><td>5.0</td><td>4.5</td><td>4.0</td><td>3.5</td><td>3.0</td></tr></table>* 용역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간 기준</td></tr>
</table>

<table>
<tr><th>평가항목</th><th>평가요소</th><th>배점</th><th>세 부 평 가 방 법</th></tr>
<tr><td rowspan="4"></td><td>(3) 분야별
참여기술인</td><td>(9)</td><td>- 분야별참여기술인 1인을 대상으로 평가</td></tr>
<tr><td>(가) 자격</td><td>2</td><td>-「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품질관리 전문분야만 해당한다)또는 안전관리(건설안전 전문분야 만 해당한다)의 특급기술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자
<table><tr><td>고급이상</td><td>중급</td><td>초급</td></tr><tr><td>2.0</td><td>1.5</td><td>1.0</td></tr></table></td></tr>
<tr><td>(나) 경력</td><td>3</td><td>- 다음에 해당하는 용역을 수행한 경력기간을 합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이상의 용역
<table><tr><td>7년이상</td><td>7년미만
6년이상</td><td>6년미만
5년이상</td><td>5년미만
4년이상</td><td>4년미만</td></tr><tr><td>3.0</td><td>2.7</td><td>2.4</td><td>2.1</td><td>1.8</td></tr></table></td></tr>
<tr><td>(다) 실적(건수)</td><td>4</td><td>- 다음에 해당하는 용역을 수행한 실적을 환산하여 합산 평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이상의 용역 수행실적 건수
· 산정방법 : 안전점검 건수
<table><tr><td>20건이상</td><td>20건미만
17건이상</td><td>17미만
15건이상</td><td>15건미만
12건이상</td><td>12건미만</td></tr><tr><td>4.0</td><td>3.8</td><td>3.6</td><td>3.4</td><td>3.2</td></tr></table>* 용역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간 기준</td></tr>
</table>

<table>
<tr><th>평가항목</th><th>평가요소</th><th>배점</th><th>세 부 평 가 방 법</th></tr>
<tr><td>나.
참여업체
용역수행
실적
[20]</td><td>(1) 정기안전점검
실적(건수)
실적(금액)</td><td>(10)
(10)</td><td>-「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물 건설공사 안전점검 용역 수행실적(건수, 금액)을 환산하여 평가
· 산정방법 : 안전점검 건수, 금액
<table><tr><td>10건이상</td><td>10건미만
8건이상</td><td>8건미만
6건이상</td><td>6건미만
4건이상</td><td>4건
미만</td></tr><tr><td>10.0</td><td>9.0</td><td>8.0</td><td>7.0</td><td>6.0</td></tr></table>
<table><tr><td>5억원이상</td><td>5억원미만
4억원이상</td><td>4억원미만
3억원이상</td><td>3억원미만
2억원이상</td><td>2억원미만</td></tr><tr><td>10.0</td><td>9.0</td><td>8.0</td><td>7.0</td><td>6.0</td></tr></table>
* 용역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간 기준</td></tr>
<tr><td rowspan="3">다.
신용도
[10]</td><td>(1) 부실벌점 및
계약 불이행
평가</td><td>(4)</td><td>- PQ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에 따라 감점

-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주체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해당업체에 대하여 당해 용역 차기년도 PQ 시 감점
(1회 이상 계약미체결 1점 감점)</td></tr>
<tr><td>(2) 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업무)정지</td><td>(3)</td><td>- PQ참여업체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1월은 30일 기준)
- PQ참여기술자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1월은 30일 기준)</td></tr>
<tr><td>(3) 재정상태
건실도</td><td>(3)</td><td>-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table><tr><th>점수</th><th>회사채
신용평가
등급</th><th>기업어음
신용평가
등급</th><th>기업 신용평가등급</th></tr><tr><td rowspan="5">3.0</td><td>AAA</td><td>-</td><td>(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td></tr><tr><td>AA+,
AA0,
AA-</td><td>A1</td><td>(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td></tr><tr><td>A+</td><td>A2+</td><td>(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td></tr><tr><td>A0</td><td>A20</td><td>(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td></tr><tr><td>A-</td><td>A2-</td><td>(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td></tr><tr><td rowspan="3">2.9</td><td>BBB+</td><td>A3+</td><td>(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td></tr><tr><td>BBB0</td><td>A30</td><td>(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td></tr><tr><td>BBB-</td><td>A3-</td><td>(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td></tr><tr><td rowspan="2">2.8</td><td>BB+,
BB0</td><td>B+</td><td>(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td></tr><tr><td>BB-</td><td>B0</td><td>(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td></tr><tr><td>2.7</td><td>B+,B0,B-</td><td>B-</td><td>(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td></tr><tr><td>2.6</td><td>CCC+이하</td><td>C이하</td><td>(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 이하에 준하는 등급)</td></tr></table></td></tr>
</table>

<table>
<tr><th>평가항목</th><th>평가요소</th><th>배점</th><th>세 부 평 가 방 법</th></tr>
<tr><td rowspan="2">라.
투자 및
기술개발
실적
[10]</td><td>(1) 투자실적</td><td>(8)</td><td>-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평가
- 산출기준 : 건설기술개발투자액 합계 /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
<table>
<tr><td>3%이상</td><td>3%미만
2%이상</td><td>2%미만
1%이상</td><td>1%미만
0.5%이상</td><td>0.5%미만</td></tr>
<tr><td>8.0</td><td>7.2</td><td>6.4</td><td>5.6</td><td>4.8</td></tr>
</table></td></tr>
<tr><td>(2)기술개발
실적</td><td>(2)</td><td>-「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 산출기준 : (건설신기술 건수×1.0)+(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건수×0.6)+(건설기술에 대한 실용신안×0.3)
<table>
<tr><td>구분</td><td>3년미만</td><td>3년이상 5년미만</td><td>5년이상 10년미만</td></tr>
<tr><td>특허</td><td>100%</td><td>80%</td><td>60%</td></tr>
<tr><td>실용신안</td><td>100%</td><td>80%</td><td>-</td></tr>
</table></td></tr>
<tr><td rowspan="2">마.
업무중첩
도
[15]</td><td>(1)책임기술인</td><td>(10)</td><td>- 수행중인 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에 따라 평가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table>
<tr><td>6월 미만</td><td>6월이상
8월미만</td><td>8월이상
10월미만</td><td>10월이상
12월미만</td><td>12월이상</td></tr>
<tr><td>10.0</td><td>9.0</td><td>8.0</td><td>7.0</td><td>6.0</td></tr>
</table></td></tr>
<tr><td>(2) 분야별
책임기술인</td><td>(5)</td><td>- 수행중인 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에 따라 평가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table>
<tr><td>6월 미만</td><td>6월이상
8월미만</td><td>8월이상
10월미만</td><td>10월이상
12월미만</td><td>12월이상</td></tr>
<tr><td>5.0</td><td>4.5</td><td>4.0</td><td>3.5</td><td>3.0</td></tr>
</table></td></tr>
</table>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바. 가점 [0.8]	(1) 건설기술자 신규고용율	(0.3)	- 건설기술자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자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자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2) 지역 안전진단기관	(0.5)	- 화성시에 본점을 둔 업체 가점 부여(0.5점)

3. 사업수행능력 평가방법

(1) 일반사항

1. PQ평가에서 선정된 용역업체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업체를 등록명부에서 제외하였을 경우 잔여 업체만을 수행기관 지정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2. 이 기준에 의한 점수 이외에 관계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점 또는 감점을 줄 수 있으며(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3점을 초과하지 못함), 가점과 감점을 합산한 점수를 총점으로 하고 총점이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한다.

3. 법, 령, 규칙 및 본 평가방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정권자의 유권해석에 의하며,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릅니다.

4.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입찰가격 개찰 결과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는 사실확인서류를 기한 내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 기한 내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서 제외됩니다.

(2)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다음 각 항을 적용한다.

가. 참여기술인의 자격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의 기준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인경력증명서**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국토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 분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교육기관에서 발급한 **교육이수확인서를 제출**(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나. 참여기술인의 경력 평가에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이상의 용역이란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국토교통부 고시「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상의 자체안전점검을 제외한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등의 용역을 말한다..

다. 참여기술인의 실적 평가에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설공사 안전점검 용역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수행한 해당용역 중 준공*된 용역 실적**을 의미하며. 아래 라. 항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한다.

* 준공이라 함은「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21조 및 별표1 에 따른 정기안전점검(건축물의 1~3차 까지 완료된 경우에 한함), 초기점검, 정밀안전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을 각각 완료하여 최종준공이 된 경우를 의미함

라.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여부에 관계없이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해당 용역의 실제 참여기간으로 평가한다. 단, 건설기술인경력증명서 상에서 실제 참여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용역의 경우의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다.

1) 발주자가 발주청인 경우 :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에 해당하는 발주청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용역명, 용역기간, 준공금액, 점검횟수(초기점검포함여부) 기재)에 의한다.

※ 실적증명서에 점검횟수(초기점검포함여부)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최종보고서 (표지, 제출문, 차수별 안전점검 실시현황 확인가능 쪽) 제출

2) 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 : 계약서(변경 계약서 포함), 계약내역, 최종보고서 (표지, 제출문, 차수별 안전점검 실시현황 확인가능 쪽만 제출), 세금계산서 및 발주자가 발급한 실적증명서(용역명, 용역기간, 준공금액 등 기재), 발주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의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하여 확인한다.

마. 참여기술인의 실적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는 위 '라'항의 아래와 같다

바. 참여기술인은 지정공고일 현재 당해 PQ참여업체에 소속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증명하는 서류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인 보유증명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내역(사업장별) 및 국민연금 가입자명부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아.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은 겸임이 불가하다.

2. 참여업체 용역수행실적의 평가는 다음 각 항을 적용한다.

가. 참여업체 용역수행실적 평가에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용역이란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국토교통부 고시「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상의 안전점검용역을 말하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수행한 해당 용역 중 준공*된 용역 수행 실적에 대하여 적용한다.

* 준공이라 함은「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21조 및 별표1 에 따른 정기안전점검(건축물의 1~3차 까지 완료된 경우에 한함), 초기점검, 정밀안전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을 각각 완료하여 최종준공이 된 경우를 의미함

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설공사 안전점검의 용역수행실적 제출서류는 위 (2)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1.라항'의 아래와 같으며, 실적산정 시 발주자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도급(하도급)받은 내용을 같은 업종의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해 재(부분)하도급한 부분은 불인정한다.

3. 부실벌점 및 계약불이행의 평가는 다음 각 항을 적용한다.

가. 참여업체 부실벌점은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또는 한국기술사회에서 발급한 누계평균 부실벌점 확인서로 평가한다.

나. 참여기술자 부실벌점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인경력증명서에서 발급한 누계평균 부실벌점 확인서로 평가한다.

다. 부실벌점 및 계약불이행 내역을 별첨 [양식 10]에 따라 작성 제출한다.

4. 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업무)정지의 평가는 다음 각 항을 적용한다.

가. 참여업체의 입찰참가제한, 영업(업무)정지는 안전진단전문기관 관할 소재지 지자체와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또는 한국기술사회에서 발급한 입찰참가제한, 영업(업무)정지 확인서로 평가한다.

나. 참여기술인의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인경력증명서로 평가한다.

다. PQ참여업체는 별첨 [양식 11]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영업(업무)정지, 기술자격정지 내역을 작성 제출한다.

5. 재정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다음 각 항을 적용한다.

가. PQ참여업체가 별첨 [양식 12]에 따라 작성 제출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로 평가한다.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의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인정)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 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평가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 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한다.

6. 투자 실적의 평가는 다음 각 항을 적용한다.

가. 건설기술개발투자액이라 함은 재무재표상의 건설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 국내외 교육 훈련비, 기타 기술개발에 투자한 비용을 말한다.(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건설기술개발 투자액 합계 / 입찰공고일로부

터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

나. 타인이 보유한 특허에 대한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하는 재정상태 검토 보고서를 별첨 [양식 13]에 따라 작성 제출한다.

라. 설립년수가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설립년도부터의 해당자료로 평가한다.

7. 기술개발 실적의 평가는 다음 각 항을 적용한다.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의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인정한다.

나. 건설신기술은 PQ참여업체(대표자 포함, 소속 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PQ참여업체(대표자 포함, 소속 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다. 기술개발 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한다.

라. 기술개발실적은 최초지정자(최초출원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점수를 지정자(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마. 건설신기술 지정증서, 특허 등록증(등록원부 포함) 및 실용신안등록증 사본을 제출할 경우 인정한다.

바. 기술개발실적의 가점해당 여부를 [양식 14]에 따라 작성 제출한다.

8.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의 가점평가는 다음 각 항을 적용한다.

가.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한다.

나.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건설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한다.

다. 경력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한다.

9. 지역 안전진단기관 가점평가는 화성시에 본점이 위치한 안전진단기관 가점 0.5점 부여

10. 기타 유의사항

가. 안전점검 수행기관 참여 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다.

- 안전점검용역 참여신청서 [양식 2]
- 해당 용역의 종합평가표 [양식 3]
- 안전점검용역입찰서[양식 15]

※ 신청서 제출 시에는 세부평가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나.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는 별첨의 [양식]을 작성하고, 예비상위 3개 업체는 사실확인서류 제출기한 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원본1부를 아래 내용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 좌측제본(크기 A4), 견출지로 항목 구분 (2) 색상 : 표지 백색, 간지 청색

(양식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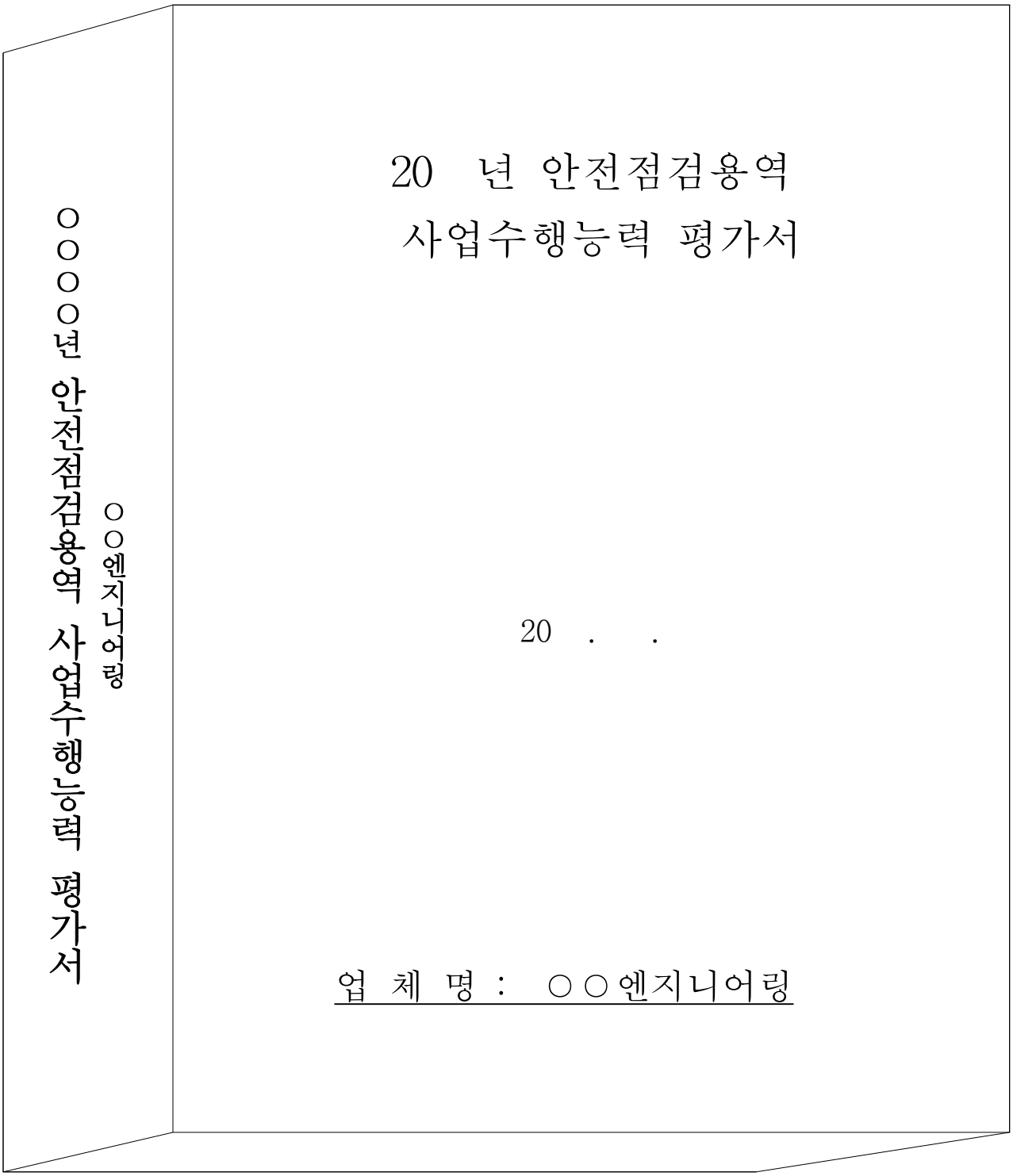

(양식 2)

안전점검용역 참여신청서

수 신 :
참 조 :
제 목 : 안전점검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20 년 경기도 화성시 (정기,정밀,초기,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용역 지정공고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자기평가서 등 평가자료 1부.

20 . .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작 성 자 : (☎:)
FAX :
E-Mail :

(양식 3)

경 기 도 화 성 시 귀 하

종 합 평 가 표

업 체 명 :

평가항목	평가요소 및 세부사항			배점한도	자기평가	화성시평가	비 고
가. 참여 기술자	(가) 등급		(1) 사업책임기술인	-	-	-	-
			(2) 분야별책임기술인	2			
			(3) 분야별참여기술인	2			
	(나) 경력		(1) 사업책임기술인	8			
			(2) 분야별책임기술인	6			
			(3) 분야별참여기술인	3			
	(다) 실적	건수	(1) 사업책임기술인	5			
			(2) 분야별책임기술인	5			
			(3) 분야별참여기술인	4			
		금액	(1) 사업책임기술인	5			
			(2) 분야별책임기술인	5			
	소 계			45			
나. 참여업체 용역수행 실적	(1) 안전점검		실적(건수)	10			
			실적(금액)	10			
	소 계			20			
다. 신용도	(1) 부실벌점 및 계약불이행			4			
	(2) 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업무)정지			3			
	(3) 재정상태 건실도			3			
	소 계			10			
라.투자 및 기술개발실적	(1) 투자실적			8			
	(2) 기술개발실적			2			
	소 계			10			
마. 업무중첩도	(1) 책임기술인			10			
	(2) 분야별책임기술인			5			
	소 계			15			※
바. 가점	(1) 건설기술자 신규고용율			(0.3)			
	(2) 지역 안전진단기관			(0.5)			
	소 계			(0.8)			
	합 계			100			

자기평가 란은 PQ참여업체에서, 화성시평가 란은 화성시에서 작성(이하 동일)

상기 종합평가표는 경기도 화성시의 「안전점검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된 것으로, 특히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3항에 적합하며[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의 용역 수행 업체(설계·시공·감리 또는 건설사업관리 등) 또는 발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는 자의 계열회사가 아님] 신청자 자기평가평점이 위조·변조 등 부정한 서류에 의해 작성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회사명

대표자 (인)

(양식 4)

기술인 현황

일련번호	기술부문	전문분야	성 명	생년월일	자격 및 학력구분	자격명	종목	근무기간	비고

※ 1. 일련번호는 전문분야별로 구분하여 1부터 기재
2. 근무기간은 경력 및 자격보유 증명서상의 근무기간과 일치시킬 것
3. 비고란에는 당해 용역에 참여하는 기술자를 기재
: 사책(사업책임기술인), 분책(분야별책임기술인), 분참(분야별참여기술인) 기재
4. 붙임서류
① 회사의 기구(조직)표
②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기술자 보유증명서
③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내역(사업장별), 국민연금 가입자 명부 (연금관리공단) 각1부

20 년 월 일

회사명

대표자 (인)

(양식 5)

사업책임기술인 경력 및 용역수행실적

성 명	등 급	직무분야	전문분야	기술자격	배점한도				자기평가				비고
					자격	경력	실적		자격	경력	실적*		
							건수	금액			건수	금액	
						8	5	5					
						10년	20건	4억원					

1. 해당분야 경력

순번	용역(사업)명	용역기간		전문분야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착수일	준공일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안전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소 계							

2. 해당분야 용역수행실적

순번	용역(사업)명	용역기간		준공금액	발주처	비 고
		착수일	준공일			
						정기안전점검
소 계		건		원		
						정밀안전점검
소 계		건		원		
						초기안전점검
소 계		건		원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소 계		건		원		
합 계		건		원		

※ 붙임서류

①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1부

②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일체

- (2)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다', '1.라', '1.마'항 참고

20 년 월 일

회사명

대표자 (인)

(양식 6)

분야별책임기술인 경력 및 용역수행실적

성 명	등 급	직무분야	전문분야	기술자격	배점한도				자기평가				비고
					자격	경력	실적		자격	경력	실적*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	6	5	5					
					기술사	10년	20건	4억원					

1. 해당분야 경력

순번	용역(사업)명	용역기간		전문분야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착수일	준공일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안전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소 계							

2. 해당분야 용역수행실적

순번	용역(사업)명	용역기간		준공금액	발주처	비 고
		착수일	준공일			
						정기안전점검
소 계		건		원		
						정밀안전점검
소 계		건		원		
						초기안전점검
소 계		건		원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소 계		건		원		
합 계		건		원		

※ 붙임서류

①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1부

②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일체
- (2)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다', '1.라', '1.마'항 참고

20 년 월 일

회사명

대표자 (인)

(양식 7)

분야별참여기술인 경력 및 용역수행실적

성 명	등 급	직무분야	전문분야	기술자격	배점한도			자기평가			비고
					자격	경력	실적(건수)	자격	경력	실적*(건수)	
					2	3	4				
					고급	7년	20건				

1. 해당분야 경력

순번	용역(사업)명	용역기간		전문분야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착수일	준공일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안전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소 계							

2. 해당분야 용역수행실적

순번	용역(사업)명	용역기간		준공금액	발주처	비 고
		착수일	준공일			
						정기안전점검
소 계		건		원		
						정밀안전점검
소 계		건		원		
						초기안전점검
소 계		건		원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소 계		건		원		
합 계		건		원		

※ 붙임서류

①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1부

② 참여기술자의 경력 및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일체

- (2)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다', '1.라', '1.마'항 참고

20 년 월 일

회사명

대표자 (인)

(양식 8)

참여기술인 인원보유현황 집계표

등 급 / 전문분야	인 원 수						비 고
	기술사	특급 기술인	고급 기술인	중급 기술인	초급 기술인	분야별 소계	
합 계							

20 년 월 일

회사명

대표자 (인)

(양식 9)

참여업체 용역수행실적

업 체 명	배점한도		자기평가			
	실적(건수)	실적(금액)	실적(건수)		실적(금액)	
	10	10	10(10)		10(5.0억)	
○○엔지니어링	10건이상	5억원이상	정기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안전점검		초기안전점검	
			공사재개전안전점검		공사재개전안전점검	
			계	건	계	원

건축물 건설공사 안전점검 용역수행실적

순번	구분	용 역 명	용역기간		준공금액	발주처	비 고
			착수일	준공일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안전점검						
	공사재개전안전점검						
소 계			건		원		

※ 붙임서류

① 참여업체 용역수행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일체

- (2)항목별 세부평가방법 '2.나'항 참고

20 년 월 일

회사명

대표자 (인)

(양식 10)

부실벌점 및 계약불이행

구 분		배 점	자 기 평 가		비 고
			감 점	평 점	
부실 벌점	① 용역업체	4			
	② 사업책임기술인				
	② 분야별책임기술인				
	② 분야별참여기술인				
계약불이행					
합 계		**4**			

※ 붙임서류 : ①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또는 한국기술사회에서 발급한 누계평균 부실벌점 확인서, ②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인경력증명서

20 년 월 일

회사명

대표자 (인)

(양식 11)

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업무)정지

구 분		제재명칭	제재기간	배점	자기평가	
					감점	평점
① 용역업체(안전진단)				3		
② 책임기술인	홍길동					
③ 참여기술인						
계				3		

※ 붙임서류 : ① 안전진단전문기관 관할 지자체, ②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또는 한국기술사회에서 발급한 입찰참가제한, 영업(업무)정지 확인서, ③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인경력증명서

20 년 월 일

회사명

대표자 (인)

(양식 12)

신용평가등급

업 체 명	신용평가회사	평가등급 (평가분야)	배점	자기평가	비 고
○○엔지니어링	한국신용평가정보	BBB+ (회사채 신용평가)	3		

※ 붙임서류 :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20 년 월 일

회사명

대표자 (인)

(양식 13)

투자실적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1. 용역업체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 소				법인등록번호	

2. 경영상태 검토내용

구 분	비율(%)	산출근거(단위: 백만원)			
자기자본비율 (최근년도)	법인 (회사단위)	자기자본		총자산	
유동비율 (최근년도)	법인 (회사단위)	유동자산		유동부채	
매출액 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매출액	
총자본회전율		총매출액		총자본	
기술개발투자 실적 (최근 3년)	A÷B (%)	기술개발투자실적		총매출액	
		합계금액(A)		합계금액(B)	
		3차년	투자액	3차년	총매출액
		2차년	투자액	2차년	총매출액
		1차년	투자액	1차년	총매출액

3. 검토기준

가. 결산서 작성사유 :

나. 결산서의 종류 :

다. 결산서 작성년월일 :

라. 기타

※ 비고 : 결산서의 종류에 대한 세부기준은 주기에 따른다.

상기 내용은 위 기재회사의 결산서에 따라 공인회계사(「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기검토보고서 작성절차 또는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쳐 작성한 것에 한함)나 세무사(「세무사법」 제2조제7호에 따라 본인이 작성한 것에 한함)가 작성하였음을 확인하며 이 재무상태 검토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연락처 :

공인회계사, 세무사 : (인)

(양식 14)

기술개발 실적

구 분	기술명	최초 지정 또는 출원일자	경과기간	출원 인수	배점	자기평가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합 계					2	

※ 붙임서류 : 건설신기술 지정증서 및 실용신안등록증 또는 특허증(등록원부 포함)

20 년 월 일

회사명

대표자 (인)

(양식 15)

안전점검용역 입찰서

입찰내용	건 명 (공고번호)				
	금 액	금 원정(₩)			
입찰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 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본인은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상기와 같이 안전점검 용역 입찰서를 제출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정한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서 성실히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

화성시 만세구 제2026 - 1133호

도로점용허가 내용 공고

「도로법」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점용허가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7일

만세구청장

도로의 종류	도시계획도로	노선명	
점용의 목적	오수관로 매설	점용기간	2035.12.31.까지
점용의 장소	상신리 1347번지	점용면적	일시: 16.5㎡ 영구: 2.3㎡
점용물의 종류	관로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 10일
공사 방법	인력 및 장비	굴착 시 교통대책	공사안내판 설치 및 차량 유도원 배치 등
도로의 복구방법	원인자 복구	도로굴착	차도 굴착
점용자의 주소·성명	만세구 환경관리과	그 밖의 사항	향남 제2026-57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화성시 만세구 제2026 - 1134호

도로점용허가 내용 공고

「도로법」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점용허가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7일

만세구청장

도로의 종류	도시계획도로	노선명	
점용의 목적	오수관로 매설	점용기간	2035.12.31.까지
점용의 장소	구문천리 608-4번지	점용면적	영구: 4㎡
점용물의 종류	관로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 10일
공사 방법	인력 및 장비	굴착 시 교통대책	공사안내판 설치 및 차량 유도원 배치 등
도로의 복구방법	원인자 복구	도로굴착	차도 굴착
점용자의 주소·성명	김도연	그 밖의 사항	향남 제2026-92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화성시 만세구 제2026 - 1135호

도로점용허가 내용 공고

「도로법」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점용허가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7일

만세구청장

도로의 종류	도시계획도로	노선명	
점용의 목적	오수관로 매설	점용기간	2035.12.31.까지
점용의 장소	상신리 1347번지	점용면적	일시: 4.5㎡ 영구: 1.47㎡
점용물의 종류	관로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 30일
공사 방법	인력 및 장비	굴착 시 교통대책	공사안내판 설치 및 차량 유도원 배치 등
도로의 복구방법	원인자 복구	도로굴착	차도 굴착
점용자의 주소·성명	㈜휴세스	그 밖의 사항	향남 제2026-138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화성시 만세구 제2026 - 1136호

도로점용허가 내용 공고

「도로법」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점용허가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7일

만세구청장

도로의 종류	리도	노선명	203호선
점용의 목적	상수관로 매설	점용기간	2035.12.31.까지
점용의 장소	구문천리 38-3번지	점용면적	일시: 21.0㎡ 영구: 0.21㎡
점용물의 종류	관로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 10일
공사 방법	인력 및 장비	굴착 시 교통대책	공사안내판 설치 및 차량 유도원 배치 등
도로의 복구방법	원인자 복구	도로굴착	차도 굴착
점용자의 주소·성명	맑은물사업소 맑은물시설과	그 밖의 사항	향남 제2026-140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화성시 만세구 제2026 - 1137호

도로점용허가 내용 공고

「도로법」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점용허가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7일

만세구청장

도로의 종류	도시계획도로	노선명	
점용의 목적	지역난방용 열수송관 보온재 보수	점용기간	착공일 ~ 30일
점용의 장소	구문천리 38-3번지	점용면적	일시: 20.0㎡
점용물의 종류	관로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 30일
공사 방법	인력 및 장비	굴착 시 교통대책	공사안내판 설치 및 차량 유도원 배치 등
도로의 복구방법	원인자 복구	도로굴착	차도 굴착
점용자의 주소·성명	㈜휴세스	그 밖의 사항	향남 제2026-151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화성시 효행구 공고 제2026-530호

공 시 송 달 공 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제1항 규정에 의거 위반행위자에게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시정명령 촉구 통보등**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기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7일

화성시 효행구청장

1. 처분내용 :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시정명령 촉구
2. 처분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3. 공시송달 대상자 : 서○환
4. 불법행위 현황

시 정 의 무 자		위 반 행 위 내 역					
성 명	주 소	행위지	행 위	용 도	구 조	면 적 (㎡)	시정요구기한
서○환	안산시상록구 이화6길 2* 103호(사동)	화성시 효행구 매송면 원리144-*	신축	관리사	비닐하우스	40	2026. 11. 2.

5. 공고기간 : 2026. 10. 27. ~ 2026. 11 .10. (14일간)
6.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7. 기타

○ 위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효행구 도시건축과로 의견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 기간 내 별도의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처분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이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소관부서	화성시 효행구 도시건축과	담당자 직/성명	주무관 홍현아	전화번호	031-5189-7719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고시 제2026 - 2호

「정남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설치공사(1단계)」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고시

화성시 효행구 정남면 일원에 추진 중인『정남하수처리구역하수관로 설치공사(1단계)』에 대하여, 하수도법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 설치인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26일

화성시 맑은물사업소장

1.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 칭 : 화성시 맑은물사업소장

나. 주 소 :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발안로 527

2. 사업 목적

정남 제기처리구역 내 미처리 오수의 황구지천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분류식 하수관로를 확충함으로써, 하천 수질 개선, 주민 생활환경 제고,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함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면적

가. 위 치 : 화성시 효행구 정남면 일원

나. 면 적 : 4.69㎢ (정남하수처리구역 면적)

4. 시설의 종류·명칭 및 규모

가. 종 류 : 공공하수도(하수관로)

나. 명 칭 : 하수관로 설치 사업

다. 규　　모 : 오수관(D80~300㎜) L=39.4㎞, 배수설비 1,264개소 등

5. 예정 하수처리구역

가. 예정 하수처리구역 : 정남처리구역(제기처리분구)

※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반영

6. 사업시행 기간

가. 착공예정일 : 2026. 12.

나. 준공예정일 : 2029. 12.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성명과 주소 [붙임 참조]

8. 관계도서는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하수과(031-5189-6874)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하수과(031-5189-68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